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

- 사 업 명 : 2021년 아르코예술기록원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 발 주 기 관 (갑)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제조사 또는 공급사(을) : (주)푸쳐누리
- 유 지 관 리 대 상 : 전자도서관시스템(TULIP)

제1조(목적) 이 협약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1년 아르코예술기록원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에 대하여 “갑”은 발주자로서 “을”은 제조사(또는 공급사)로서 위 사업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및 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을”이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해야하는 범위는 규격서(시방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갑”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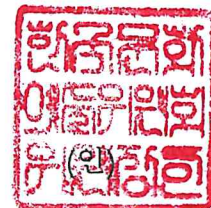
제3조(협약금액)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을”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갑”과 “을”이 협의하는 금액 (₩ 583,333원/월, 부가세포함)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을”은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을”은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021년 5월 31일

“갑” (발주기관명)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을” (제조사 또는 공급사명) (주)푸쳐누리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

- 사 업 명 : 2021년 아코예술기록원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 발 주 기 관 (갑)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제조사 또는 공급사(을) : (주)브이웨이
- 유 지 관 리 대 상 : 백업솔루션(Acronis)

제1조(목적) 이 협약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1년 아코예술기록원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에 대하여 “갑”은 발주자로서 “을”은 제조사(또는 공급사)로서 위 사업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및 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을”이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해야하는 범위는 규격서(시방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갑”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을”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갑”과 “을”이 협의하는 금액 (₩ 150,000원/월, 부가세포함)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을”은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을”은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021년 5월 31일

“갑” (발주기관명)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을” (제조사 또는 공급사명) (주)브이웨이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

- 사 업 명 : 2021년 아르코예술기록원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 발 주 기 관 (갑)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제조사 또는 공급사(을) : (주)웨어벨리
- 유 지 관 리 대 상 : DB접근제어(Chakra MAX)

제1조(목적) 이 협약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1년 아르코예술기록원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에 대하여 “갑”은 발주자로서 “을”은 제조사(또는 공급사)로서 위 사업의 낙찰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및 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을”이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해야하는 범위는 규격서(시방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갑”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을”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갑”과 “을”이 협의하는 금액 (₩ 264,000원/월, 부가세포함)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을”은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을”은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021년 5월 31일

“갑” (발주기관명)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을” (제조사 또는 공급사명) (주)웨어벨리

(인)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

- 사 업 명 : 2021년 아르크예술기록원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 발 주 기 관 (갑)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제조사 또는 공급사(을) : (주)스톤인TEGRITI
- 유 지 관 리 대 상 : 예술기록물 관리페이지(한국예술디지털아카이브, 소장자료 검색, 미술작가500, 대표페이지)

제1조(목적) 이 협약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1년 아르크예술기록원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에 대하여 “갑”은 발주자로서 “을”은 제조사(또는 공급사)로서 위 사업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및 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을”이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해야하는 범위는 규격서(시방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갑”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을”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갑”과 “을”이 협의하는 금액 (₩ 3,500,000원/월, 부가세포함)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을”은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을”은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021년 5월 31일

“갑” (발주기관명)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을” (제조사 또는 공급사명) (주)스톤인TEGRITI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

- 사 업 명 : 2021년 아르코예술기록원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 발 주 기 관 (갑)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제조사 또는 공급사(을) : (주)아임솔텍
- 유 지 관 리 대 상 : DBMS(Oracle)

제1조(목적) 이 협약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1년 아르코예술기록원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에 대하여 “갑”은 발주자로서 “을”은 제조사(또는 공급사)로서 위 사업의 낙찰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및 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을”이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해야하는 범위는 규격서(시방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갑”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을”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갑”과 “을”이 협의하는 금액 (₩ 535,565원/월, 부가세포함)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을”은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을”은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021년 5월 31일

“갑” (발주기관명)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을” (제조사 또는 공급사명) (주)아임솔텍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

- 사 업 명 : 2021년 아코예술기록원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 발 주 기 관 (갑)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제조사 또는 공급사(을) : (주)제스트정보기술
- 유 지 관 리 대 상 : WEB/WAS(Resin)

제1조(목적) 이 협약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1년 아코예술기록원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에 대하여 “갑”은 발주자로서 “을”은 제조사(또는 공급사)로서 위 사업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및 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을”이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해야하는 범위는 규격서(시방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갑”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을”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갑”과 “을”이 협의하는 금액 (₩ 220,000원/월, 부가세포함)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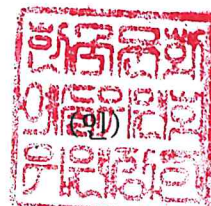
제4조(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을”은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을”은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021년 5월 31일

“갑” (발주기관명)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을” (제조사 또는 공급사명) (주)제스트정보기술



220-86-93882

(주)제스트정보기술 임 항 순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 121

7층 703호(가산동, 에이스타워)

서 비 스 소프트웨어개발

SI 개발용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

- 사 업 명 : 2021년 아르코예술기록원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 발 주 기 관 (갑)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제조사 또는 공급사(을) : (주)티젠소프트
- 유 지 관 리 대 상 : 동영상솔루션(TG 1st Movis V3.5)

제1조(목적) 이 협약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1년 아르코예술기록원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에 대하여 “갑”은 발주자로서 “을”은 제조사(또는 공급사)로서 위 사업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및 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을”이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해야하는 범위는 규격서(시방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갑”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을”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갑”과 “을”이 협의하는 금액 (₩ 382,200원/월, 부가세포함)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을”은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을”은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021년 5월 31일

“갑” (발주기관명)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을” (제조사 또는 공급사명) (주)티젠소프트

